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1. 3. 2.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13호로 2021년 2월 1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협의회의 명칭, 목적, 구성 및 기능(제1~4조)
- 협의회의 회의, 협의사항, 의견 청취, 협의사항의 조정(제5~9조)
-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구성, 자문위원(제10~11조)
- 협의회의 사무국, 경비, 수당 및 회계보고(제12~15조)
- 협의회의 운영세칙(제16조)

4. 참고사항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52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5.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사업을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위해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해 영등포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지자체가 2개 이상의 지자체와 관련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경기도, 서울특별시 중구를 비롯한 전국 50여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여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협회의 주요 협의 사항은 규약 제6조에 따라,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내·외 남북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임.

○ 검토 결과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우리 구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타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본 협의회가 협의사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지자체 간 정책을 획일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임.

또한, 본 협의회 가입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의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 이후에도 추진 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및 협의 등의 각별한 노력이 요망됨.

참 고 자 료

1 지방재정법

제152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

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